

넷째, 조사 및 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무역구제조치는 모두 WTO에 통보되고 조치의 내용이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가로부터 WTO에 제소 당하게 되거나 무역보복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은 WTO규범에 위배되는 법률법규를 정리하고,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법률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그동안 관련법규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었다. 따라서 향후 정보공개규칙 및 정보열람규칙 등을 제정하여 세이프가드조치 조사 및 판정에서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FTA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하여 FTA체결에 따른 특례조항 검토제도 등에 대한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무역환경 분야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 9. 불법어업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이 남 우  
지도교수 이 경 호

우리나라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의 중요한 식량산업이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40%를 공급하는 주요한 산업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수산물의 소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수산자원은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無主物이 아니며 누구나 이용권을 갖는 공동소유의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관리 자원으로 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하는 것이다.

수산자원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인류의 관리 노력에 따라 회복과 멸종의 갈림길에 놓여있고 수산업의 존폐도 자원관리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어업단속과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어업근절 없이는 그 어떠한 수산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 될 수밖에 없다.

불법어업은 수산업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되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어 연근해어장의 어업자원은 최대 지속적 생산량의 한계를 넘어 고갈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산관계법제도상의 문제점과 수산업발전을 저해시켜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상되고 있는 미래상황을 예측하면서 종합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며 현재의 시점에서 불법어업근절, 즉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정책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무분별한

濫獲을 초래하게 되어 연근해 수산자원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어업단속에 관한 관련법령을 연구·검토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의 발견을 통해 어업단속에 대한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摸索함으로써 불법어업근절을 통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불법어업의 부각된 문제점에 대한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수산업법상 양벌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특정업무의 담당자들이 비록 행정법상 신분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경영조직내부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하부에 그 책임을 전가한 기업체조직내부의 대표자와 대리인 또는 담당부서장들의 책임을 묻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 현실과 乖離된 문제로 현행 법제도의 불합리로 인한 조업구역에 대해서는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법 재고 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조업구역에 대한 관련법령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수산자원보호령상, 자원의 보호·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조항 들은 법개정을 통하여 추가로 몰수 규정으로 편입하여, 범죄 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의 일종인 몰수규정을 확대적용 함으로써 불법어업에 강력대응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과태료 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이 마땅하다.

넷째, 수산자원관리제도로 직접적 규제인 어획노력량규제를 위하여 허가 대상인 어구 및 어선수의 제한, 어업별 허가의 定限數制限, 어선의 톤수 제한과 더불어 어선 마력수 제한에 관한 규제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불법어업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엄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법적인 제재에 앞서 무엇보다도 수산업 종사자들의 사고방식을 불식시켜 어업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한 적극적인 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어업을 감시 적발하는 민간조직체를 구성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어민·시민의 감시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여섯째, 불법어업 단속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조직재편방안에 관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의 지도단속선 및 지도인력을 통합하여 연근해 어선어업 및 EEZ내에서의 외국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주된 책임업무로 하고, 어업권어업, 구획어업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어업단속공무원을 주된 담당 책임업무로 하는 불법어업 단속 2원화 방안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불법어업의 단속강화 및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곱째, 수산자원보호령의 독립 입법화하는 방안으로, 수산업법을 중심으로 하여 복잡 난

해하게 많은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및 번식과 관련한 항목은 수산업법의 하위 법령으로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이관시키고 또한 수산자원보호령의 독자성을 인정 입법 제도화하여 수산자원보호법에 어업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다소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수산관계법령의 법집행에 통일성과 법적안정성 및 예측 가능한 어업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확고한 제재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강력히 요구하는 분야인 수산자원보호법에 국가권력을 적절히 투입하여 어업범죄에 강력 대처해야 할 것이다.

## 10. 선주책임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문 춘 언  
지도교수 정 영 석

船舶所有者責任制度는 船舶所有者가 船舶의 利用 또는 海上航行의 運送過程에서 지게 된 債務 중 일정한 要件이 갖추어진 것에 대하여 海産 또는 일정한 金額을 限度로 總責任(total liability)을 制限하는 制度로서 11세기 아말피 法典에서 최초의 근거가 나타난다.

그 후 위 제도는 1681년의 프랑스의 海事勅令을 통해 세계적으로 普及되어 委付主義, 執行主義, 船價責任主義, 金額責任主義 등의 독자적 입법형태로 존재하다가 交易增大과 더불어 涉外的 法律關係가 늘어 가면서 國際海法會(C.M.I.)를 중심으로 統一協約의 채택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가 1924年 協約, 1957年 協約 및 1976年 協約이다. 현행 우리상법이 수용한 1976년 협약은 선박소유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海上企業의 活動保護 및 海上交通安全의 確保와 海洋環境保護라는 公益優先 내지 社會正義의 具現을 표방하면서 책임제한의 주체를 선박소유자, 구조자 등은 물론, 이들의 履行補助者와 責任保險者까지 확대하고 있다.

책임제한 대상채무와 관련하여 1976年 協約은 예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여 책임의 원인을 불문하고 船上에서 또는 선박운항이나 구조활동과 관련한 것이면 모두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1969년의 “기름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의 適用을 받는 “기름汚染損害”나 기타 “原子力損害” 등 特別法이나 다른 協約에 의하여 責任制限을 받는 경우 이를 책임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관적 배제사유로는 “不注意하게 또한 損害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저지른”이라고 規定함으로써 未必的故意가 있는 경우 책임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책임제한을 사실상 광범위하게 인정한다.